

울산지방법원 2024. 5. 29 선고 2023가단1140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, 박환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병진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4. 3. 6.

판 결 선 고 2024. 5. 29.

주 문

1. 피고들과 D(E생, 경남 의령군 F) 사이에 경남 의령군 G 대 565㎡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. 9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2. D에게,

가. 피고 B는 경남 의령군 G 대 565㎡ 중 피고 B 지분 2분의 1 중 일부(13분의 1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C는 경남 의령군 G 대 565㎡ 중 피고 C 지분 2분의 1 중 일부(13분의 1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1, 2, 갑 제3, 4호증, 갑 제5호증의 1, 2, 갑 제6, 7호증, 갑 제8호증의 1, 2,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사단법인 H,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별지 청구원인 사실1) 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과 D(E생, 경남 의령군 F) 사이에 경남 의령군 G 대 565㎡(이하 ‘G 땅’이라고 한다)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2. 9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, 취소되어야 한다. 그리고 D에게, 피고 B은 G 땅 중 피고 B 지분 2분의 1 중 일부(13분의 1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는 G 땅 중 피고 C 지분 2분의 1 중 일부(13분의 1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.

판사 이준영

별지

1) 다만, 그 내용 중 9쪽 8줄, 9줄을 「인 ‘C’(피고2, 수익자)와 자식들인 ‘I’, ‘J’이 있었습니다.」로 정정한다.